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 전문가의 보고서,

클라우디아 말러 *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

Claudia Mahler *

요약

본 보고서는 노인인권에 관한 결의안 42/12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독립 전문가는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의 만연함에 대한 조사와 인식 개선 활동 및 가능한 원인과 징후를 분석한다. 또한, 국제 및 지역적 차원에서 기존의 법과 정책적 틀이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을 예방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이후 독립전문가가 내린 결론과 권고사항은 각국이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을 해소 및 예방하며, 노인의 권리 증진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틀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에는 보고 기간 중 독립 전문가의 활동에 대한 개요도 담겨 있다.

* 제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계획된 발간일 이후 본 보고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했음(Agreement was reached to publish the present report after the standard publication date owing to circumstances beyond the submitter's control).

I. 서론(Introduction)

1. 본 보고서는 노인인권에 관한 이사회 결의안 42/12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 전문가(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는 코로나 19(COVID-19) 대유행의 결과로 선명하게 밝혀진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의 만연함을 조사한다. 특히, 독립 전문가는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의 확산에 대한 검토 및 인식 제고를 행하고, 가능한 원인과 징후를 분석하며, 기존의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법적 틀이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고, 권고사항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는 보고 기간 중 독립 전문가의 활동에 대한 개요도 담겨 있다.

II. 독립 전문가의 활동(Activities of the Independent Expert)

2. 보고 기간 중 독립 전문가는 코로나 19 팬데믹, 노인인권에 대한 관련 영향, 노인을 복구 조치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 등에 초점을 맞춘 여러 활동과 토론에 참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립 전문가는 국가, 국제기구, 시민사회, 국가 인권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했다. 지난해 수행한 활동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3. 독립 전문가는 이사회 결의안 42/12와 총회 결의안 74/125에 따라 코로나 19가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첫 번째 주제별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기 위해 유엔 총회 3 위원회와 소통했다.¹ 독립 전문가의 프리젠테이션에는² 코로나 19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무총장의 정책 브리핑을 환영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독립 전문가는 행위능력, 돌봄의

¹ A/75/205.

² Statement available at: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OlderPersons/FinalStatement-IE-GA75.docx>.

질, 장기요양, 완화치료, 폭력과 학대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가능한 치료법, 독립성과 자율성, 특히 주택과 관련된 적절한 생활 수준에의 노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법적 수단이 노인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4. 2020년 10월 1일 ‘국제 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을 기념하는 성명에서³ 독립 전문가는 노인 이슈의 만성적인 비가시성을 지적하고, 정보에 기초한 성공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을 요구했다. 독립 전문가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파괴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면서 노인, 특히 여성노인의 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립 전문가는 포용적인 장기 회복을 위해서는 보편적 노령연금과 적절한 수급 수준이 필요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위한 사회경제적 구제책과 사회안전망 도입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같은 기간, 독립 전문가는 인권이사회 45차의 부대행사로 열린 가상 기관간 행사에서 노인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의 상황에서 나이듦의 기회와 과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연설했다. 독립 전문가는 데이터 격차 문제와 코로나 19가 노인인권 에 미치는 불균형적인 악영향에 대해 다루었다. 이 행사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집행이사,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집행위원장, 회원국, NGO 고령화위원회(NGO Committee on Ageing) 등이 참석했다.

6. 2020년 11월 2일 독립 전문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부위원장이자 민주주의 및 인구위원회

³ 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 “Older persons remain chronically invisible despite pandemic spotlight, says UN expert”, 1 October 2020.

집행위원장(Commissioner for Democracy and Demography)인 듀브라브카 슈이카(Dubravka Šuica)와 함께 앞으로 10년간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건강한 나이듦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열린 ‘활동적이고 건강한 나이듦의 유럽 주간(European Week of Active and Healthy Ageing)’ 개막 세션에서 연설했다. 이 논의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영향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고령화에 대한 유럽의 전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⁴

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나이듦에 관한 녹색서(green paper on ageing)를⁵ 발표한 데 이어 독립 전문가는 관련 공공 협의에 참여해 2021년 4월 장애인권 특별보고관 및 건강권 특별보고관과 함께 공동 기고문을 제출했다.⁶ 이 수임자들은 평등, 비차별, 참여, 자율성 및 독립성의 원칙에 근거한 나이듦에의 인권 기반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선택지가 담긴 백서(white paper)를 상세화할 것 또한 권고했다.

8. 2020년 11월 이 수임자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의 차별화된 접근법에 대한 권고 의견 준비를 위한 요구에 따라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⁷ 상기 제출서에는 접근성과 이동성, 의료 및 심리치료, 완화치료 및 완전한 사회재적응(full social reinsertion)에의 권리 등 적절한 노인 구급 조건을 보장하는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가 요약되어 있다. 2021년 4월 19일 독립 전문가는 자유를 박탈당한 노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도전을 강조하기 위해 미주인권재판소가 개최한 관련 가상 공청회에 참석했다.

⁴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17 June 2020.

⁵ European Commission, “Green paper on ageing: fostering solidarity and responsibility between generations”, 27 January 2021.

⁶ 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Contribution to the public consultation on the EU Green Paper on Ageing – Fostering solidarity and responsibility between generations”, 21 April 2021.

⁷ See https://www.corteidh.or.cr/sitios/observaciones/OC-29/14_Exp_Indepen.pdf.

9. 2020년 12월 1일 독립 전문가는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유엔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이 주관한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3차 회의의 가상 부대행사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독립 전문가는 노인과 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있어 중복성과 차별성을 성찰하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했다. 독립 전문가는 미국 은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와 유엔경제사회국이 2021년 2월 8일에 주최한 유엔 사회개발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제59차 세션의 가상 부대행사인 디지털 기술과 노인 관련 브리핑에도 참여했다. 또한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가 2021년 3월 18일 주최한 유엔 여성 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제65회 세션의 가상 부대행사에 여성노인과 과부에 대한 폭력을 주제로 한 논의를 통해 참가하였다.

10. 2021년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독립 전문가는 노인인권에 초점을 맞춘 제20차 아셈인권세미나에 참가하였다. 기조 개막연설에서 독립 전문가는 코로나 19 대유행의 상황에서 노인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모든 수준에서 사회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인권기반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 2021년 2월 25일 독립 전문가는 제7회 지속가능발전 아프리카 포럼(Africa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부대 행사에서 연설하였다. 이 행사는 아프리카 고령화에 관한 이해관계자 그룹(Stakeholder Group on Ageing Africa)이 주최하였으며, 노인의 수용과 권리를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10년의 활동 지원 및 더 나은 재건을 목표로 정책과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논의는 법률 및 정책 개혁에 있어 고령화와 노인의 권리 통합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12. 독립 전문가는 그의 임무에 따라 노인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가상으로 열린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의 제11차 세션에 참석했다. 그는 고위급 패널에서 코로나 19에 대해 발언을 했는데, 이는 연령주의와 연령차별 근절 등을 포함한 노인인권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근로권에 관한 실질회의에서 독립 전문가는 연령차별이 고용 과정의 전 단계에서 노인이 직면하는 핵심 문제로 나타났으며, 이 문제는 적절한 생활 수준, 사회적 포용 및 독립성의 권리에 매우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⁸

13. 2021년 4월 독립 전문가는 노인과 평생학습에 관해 이베로-아메리칸 노인 상황 협력 프로그램(Ibero-American Programme for Cooperation on the Situation of Older Persons) 소식지에 기고했다.⁹ 평생학습 프로그램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정보·서비스와 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인프라에의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적시 지원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포용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의 평생학습 기회 촉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4에 따라 노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과 지원이 명시되어야 한다.

14. 2021년 6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에 독립 전문가는 세계적으로 방치, 고립, 적절한 서비스의 부족 등의

⁸ Statements available at <https://social.un.org/ageing-working-group/elevnthsession.shtml>.

⁹ Newsletter in Spanish available at <https://oiss.org/boletin-no-23-programa-iberoamericano-de-cooperacion-sobre-la-situacion-de-las-personas-adultas-mayores/>.

문제를 보이는 요양원에 대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시정과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있어 노인이 경험하는 장벽에 모두가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격리 조치의 결과로서 가족 구성원이나 돌봄 제공자와 함께 고립된 노인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의 증가와 높아진 방치, 학대 및 폭력의 위험에 관한 보고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주목도는 늘지 않았다. 독립 전문가는 굳어진 연령주의적 태도가 노인의 권리 주장을 방해하고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하며 노인의 법에의 접근은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¹⁰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기념하여 독립 전문가는 법에의 접근에 초점을 맞춘 가상행사에도 참여했다.¹¹

15. 2021년 6월 30일 독립 전문가는 인권이사회 제47차 세션 기간 열린 기후변화에서의 노인인권 관련 패널 토론회에 참석했다.¹² 토론에서 독립 전문가는 기후변화가 노인의 권리에 미치는 불균형적인 영향이 다양한 지역의 국가 방문 기간 관찰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가가 교차 요인에 주의를 기울이고 노인이 관련 평가와 정책에 체계적으로 포함되도록 촉구했다.

16. 독립 전문가는 코로나 19 팬데믹 및 그에 따른 여행 제한으로 인해 보고 기간 국가 방문을 수행할 수 없었다. 독립 전문가는 세계 공중보건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국가 방문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방문 요청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국가에 감사를 표하고 다른 국가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

¹⁰ 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 “COVID-19: violence and neglect increases for older persons during lockdown, says UN expert”, 14 June 2021.

¹¹ Video recording available at www.youtube.com/watch?v=MPA3GafPosA&t=177s.

¹² See www.ohchr.org/EN/Issues/HRAndClimateChange/Pages/RightsOlderPersons.aspx.

III. 연령주의의 배경과 개념적 구조

(Background and conceptual framing of ageism)

17. 코로나 19 팬데믹은 많은 지역에서 고착된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을 드러냈는데, 여기에는 격리 및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타 조치들의 원인으로 노인을 비난하는 것도 포함한다. 코로나 19가 노인에게 미치는 불균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이 팬데믹은 만성적으로 비가시적인 노인 인구에 대한 인권 보호의 공백을 집중 조명했고, 기존의 노인 권리 침해를 확대하여 보게 해주었다.

18. 이러한 맥락에서 2020년 독립 전문가가 유엔 총회에 제출한 첫 보고서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노인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평가가 담겨있다. 이 보고서에서 독립 전문가는 많은 경우 대응계획에 노인의 특정 요구가 포함되지 못했고, 팬데믹을 다루기 위해 마련된 정책에서 코로나 19 이전의 가시적이거나 명백하지 않았던 차별적 접근법이 반복됐다고 결론 내렸다.

19. 유엔 사무총장 또한 코로나 19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브리핑에서 코로나 19가 공적 토론과 소셜 미디어에서의 혐오 발언 등 연령주의와 노인에 대한 낙인찍기를 증가시킴을 인정했다. 그는 노인에게 노쇠하고 약하다는 꼬리표를 붙이지 말 것을 요구했다. 146개국은 이 정책 브리핑을 지지하는 성명서에 서명했고 연령주의의 심화에 대한 우려에 입장을 같이했다.¹³

¹³ United Nations, “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older persons”, May 2020.

20. 독립 전문가가 수행한 이전 작업에 더하여 본 보고서는 데스크 리서치와 2021년 1월의 기여 요청에 대한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쓰였다.¹⁴ 독립 전문가는 이 주제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기여한 모든 이에게 감사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가능한 한 여러 지역의 경험을 강조하지만,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최근 데이터와 정보 수집의 어려움 또한 인지하고 있다. 독립 전문가는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이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 보고서의 초점은 노인에 있다.

A. 연령주의의 개념(Conceptualizing ageism)

21. 독립 전문가는 연령주의를 생활 나이(chronological age)나 어떤 사람이 “늙었다(old)”(또는 “연세가 많다(elderly)”)라는 인식에 기반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또는 차별적 행동이나 관행으로 정의한다.¹⁵ 독립 전문가는 “elderly”라는 용어가 일반적인 노인이나 노인 한 사람을 묘사할 때 종종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 용어의 사용은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적 고정관념을 영구화하며, 노인이 노쇠하고 연약하며 능력이 부족하다고 암시한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 총회는 “노인(older persons)”이라는 용어가 유엔이 사용할 적절한 용어라고 1995년 결정했다.¹⁶

22. 노인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 집단으로서 연령주의를 경험한다. 연령주의는 암시적이거나 명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다양한 수준에서

¹⁴ Submissions can be consulted at:

www.ohchr.org/EN/Issues/OlderPersons/IE/Pages/AgeismAgeDiscrimination.aspx.

¹⁵ See, for example, Fredrik Snellman, “Whose ageism? The reinvigoration and definitions of an elusive concept”, *Nordic Psychology*, vol. 68, No. 3 (2016), pp. 148–159; Thomas Nicolaj Iversen, Lars Larsen and Per Erik Solem, “A conceptual analysis of ageism”, *Nordic Psychology*, vol. 61, No. 3 (2009), pp. 4–22. See also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pdate to the 2012 Analytical Outcome Study on the normative standard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relation to older persons”, March 2021, paras. 33–41.

¹⁶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0/141.

표현될 수 있다.¹⁷ 개인 차원에서의 연령주의는 내재화된 고정관념과 편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특정 활동을 자제함으로써, 또는 노인에게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이며 거들먹거림으로써 타인과 자신을 향해 드러낼 수 있다. 지역사회와 가족 차원에서의 연령주의는 노인의 행동과 역할에 대한 태도, 인식, 기대가 사회·문화적 규범에 의해 프레임 됨으로써 나타난다. 사회적 수준에서의 연령주의는 노인의 권리와 노인에 대한 평등대우원칙이 정책과 법률에 통합되는 방식에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종종 고정관념과 억측의 영속화와 제도화를 가속한다.

23. 연령주의는 연령 때문에 노인이 다소 부족하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연령주의라는 용어는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가 피부색과 성별 때문에 그러했듯이,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사람을 체계적으로 고정관념화하고 차별하는 현상이라고 묘사한 로버트 N. 버틀러(Robert N. Butler)에 의해 만들어졌다. 노인은 노쇠하고, 사고방식과 태도가 경직됐으며, 도덕성과 기술력에 있어서 구식이라고 여겨진다. 로버트 버틀러는 연령주의가 젊은이에게 노인을 자신과 다른 존재로 보게 하여, 그와 노인 간의 인간적 동질감을 미묘하게 중단시키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오래 살수록 우리가 연령주의의 궁극적 희생양이 되기 때문에 연령에 대한 편견은 모든 사람에 대한 편견이라고도 언급했다.¹⁸

24. 노인은 세계 인구에서 가장 이질적이고 다양하지만 연령주의는 억측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일반화된 방식으로 노인을 인식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 결과 연령주의는 연령차별을 초래하며 노인인권의 충분한 향유를 저해한다. 연령주의는 모든 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대 간 분열을 불러온다.

¹⁷ Referred to as the micro, meso and macro levels (Thomas Nicolaj Iversen, Lars Larsen and Per Erik Solem, "A conceptual analysis of ageism").

¹⁸ Robert N. Butler and Myrna I. Lewis, *Aging and Mental Health: Positive Psychosocial Approaches* (St. Louis, Mosby, 1973).

25. 연령주의는 상당 부분 무의식적이고 사회적으로 용납되며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만연해 있다. 연령주의는 법률, 의료, 교육, 정치 및 기타 사회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으며 개인의 가정, 감정, 행동을 형성한다. 널리 퍼진 대인 연령주의는 구조적 차별을 영구화하고 정당화한다.

26. 연령주의는 아동기에 수용되고 내면화되며 편견은 사회적으로 노년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근시안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된다. 노인은 노년과 연관된 만연한 낙인 때문에 부정적이고 편견적인 태도를 내면화하면서, 자기 가치나 존중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하거나 자신이 노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은 노인이 고립, 방임, 학대, 유기, 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과 통제 부족과 같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행동과 관행을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다.

27. 내재화된 연령주의는 연령을 이용하여 사회를 구조화하는 법률, 정책 및 관행을 만드는 구조적 연령주의로 이어진다. 연령차별의 뿌리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연령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연령주의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사회적, 보건적,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¹⁹ 나이듦과 노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노인을 권리를 가진 자로 인식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깊이 뿌리내린 부정적 인식은 정책과 관행을 지속해서 뒷받침하고 있어 노인의 동등한 인권 향유에 뚜렷한 장벽을 만들고 있다. 연령주의와 관련된 상황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악화되었다.

28. 독립 전문가는 WHO가 발간한 *연령주의 국제보고서*를 환영한다. 이 보고서는 연령주의를 연령을 기반으로 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이라고 규정하면서 연령주의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대와 인식을 높이는

¹⁹ Ibid.

것을 목표로 한다.²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차별은 행동의 형태로 연령주의적 편견이 표출된 것이다.

29. *연령주의 국제보고서*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자로, 이들은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교육 수준이 낮은 젊은 남성일수록 노인에 반해 연령주의적이다. 돌봄 의존도가 높거나, 첨단기술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거나, 기대수명이 낮은 나라에서 사는 노인은 연령주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심신 건강이 좋지 않은 것도 노년기 자기 지향적 연령주의의 위험요소이다. 이 연구는 세대 간 접촉이 연령주의와 자기 지향적 연령주의를 줄이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 또한 발견하였다.²¹

30. 유엔인구기금(UNPF)은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50개 이상 국가에서의 연령주의 만연에 대해 파악하였다. 응답자는 노인의 가치를 젊은이의 가치보다 낮게 여긴다고 보고하였다. WHO *연령주의 국제보고서*의 결과와는 달리, 고소득국가의 결과가 더 나쁘게 나타났으며, 노인 비율이 낮은 저소득국가의 경우 노인에 대한 존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²²

B. 노년의 정의에 대한 복잡성(Complexities of defining older age)

31. 나이는 사회와 우리 자신의 삶을 구조화하는데 널리 사용된다. 국내, 지역적, 국제적 정책 및 법제에서 노인을 정의하기 위해 생활 나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연령주의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분류를 위한 명확한 경계가 없어 연령주의의 대상 집단이나 피해자를 정의하기

²⁰ WHO, *Global Report on Ageism* (Geneva, 2020).

²¹ Submission of WHO.

²² Submission of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어렵다는 점은 연령주의 연구와 근절에 대한 복잡성을 가중시킨다. 전형적인 삶의 궤적이 배움과 관련된 유년기 및 소년기, 일과 관련된 청년기 및 장년기, 은퇴와 관련된 노년기 등의 세 가지 뚜렷한 단계로 구성된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32. 기대수명의 증가와 삶의 선택과 기회의 진화로 나이는 하락과 비활동의 동의어가 아니다.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e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정책과 제도적 관행은 고정관념적 3단계 생애 과정을 답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복지제도는 사회정책 수급 자격에 대해 나이 제한을 계속 사용하며, 연령을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노인을 배제하는 정년이 계속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33. 나이듦에 관한 정책과 사회적 가정은 생물학적 연령(biological age)의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어, 노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그들의 신체 기능과 여력의 측면에서 노인의 상태를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 생물 의학 분야에서 나이듦이란 의학적 개입이 당연한 의학 문제로 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의학적 모델은 나이듦에 대한 정책적 사고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며, 노인의 필요 충족 능력을 손상하는 정신적, 육체적 쇠퇴를 노년기 특유의 경험으로 본다. 하지만 노인의 특징이라 종종 여겨지는 질병, 허약함, 감소한 능력, 적응력 부족 및 의존성 등은 노년기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다.

34. 연령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이 노인인지 결정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산물이다.²³ 재정과 식량의 불안정, 사회적 고립, 가혹한 생활 환경, 생활 스트레스 및 환경적 장애물에서의 노출은 연령과 비교하여 허약한 건강,

²³ Carroll L. Estes, Simon Biggs and Chris Phillipson, *Social Theory, Social Policy and Ageing: A Critical Introduction* (Open University Press, 2003); and Chris Phillipson, *Reconstructing Old Age: New Agendas in Social Theory and Practice* (London, Sage Publications, 1998). See also WHO, "10 facts on ageing and health", 1 May 2017.

질병 및 사망에 대해 더 큰 위험을 야기한다.²⁴ 반면 질병 예방, 고정관념과 연령차별 해소,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참여 촉진, 안전한 생활과 노동 환경 설계, 적절한 돌봄 및 지원 보장 등은 모두 노년기 기능 저하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원주민, 난민, 실항민,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HIV 환자 등과 같은 집단은 불리한 생활 조건 때문에 다른 집단보다 더 일찍 나이들의 생물학적 징후에 직면할 수 있다.

35. 상기 수임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전쟁, 분쟁, 자연재해의 상황을 견뎌낸 사람은 부유한 사회의 건강한 고령화 지표로서 헤아려질 수 없다.²⁵ 노년에 대한 인식은 공동체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같은 기타 요인과 문화적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족·원주민 공동체에서 "어르신(elders)"은 높은 지위와 권력을 누리며, 지혜로 그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대수명이 낮은 국가에서는 기대수명이 높은 국가보다 노년기가 더 일찍 시작된다.

36. 이전 보고서에서 독립 전문가는 연령, 성별 및 사회·경제적 관련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공공 데이터에 노인을 포함하는 것이 노인에 포용적인 공공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²⁶ 고령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관점을 채택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이것은 노인을 위한 생활 상황과 준비 및 노인의 사회 기여와 모든 인권 향유를 평가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37. 사회적 산물로서의 연령은 노인의 취약함과 보호 필요를 명백하다고 보는 대신 노인의 능력, 자율성, 독립성을 강조함으로써 나이들에 대한 인권적

²⁴ See www.who.int/healthinfo/18_SocialDeterminantsAgeing_Steptoe.pdf?ua=1.

²⁵ A/HRC/42/43.

²⁶ A/HRC/45/14.

담론의 방향을 정한다. 고령이나 개인의 고유한 약점보다는 사회적 장벽이 노인의 인권 향유에 장애가 되고 있다.²⁷

* 이번 국문 번역 요약본은 원문의 'I. 서론,' 'II. 독립 전문가의 활동,'과 'III. 연령주의의 배경과 개념적 구조'를 담았습니다. 본 보고서의 10번은 2021년 2월22일부터 24일까지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GAC)가 공동주최자 중 하나였던 '제20차 아셈인권세미나— 노인인권(20th Informal ASEM Seminar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에서 독립 전문가가 활동한 사항이 쓰여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undocs.org/A/HRC/48/53>).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셈 지역과 국제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인권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자료를 요약 및 번역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담당자(elee@asemgac.org)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²⁷ Frédéric Mégret,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a growing challenge”, Human Rights Law Review, vol. 11, No. 1 (March 2011).